

※ 경찰감찰규칙

<p>목적 (제1조)</p>	<p>이 규칙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에 소속하는 경찰공무원, 별정·일반직 공무원(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 의무경찰 등(이하 “소속공무원”이라 한다)의 공직기강 확립과 경찰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감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정의 (제2조)</p>	<p>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무위반행위”란 소속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 등에 따른 각종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2. “감찰”이란 복무기강 확립과 경찰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기관 또는 소속공무원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감찰관의 직무활동을 말한다. 3. “감찰관”이란 제2호에 따른 감찰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p>적용 범위 (제3조)</p>	<p>경찰기관의 감찰업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감찰관의 행동준칙 (제4조)</p>	<p>감찰관이 감찰활동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준칙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감찰관은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감찰대상자 소속 기관장이나 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 2. 감찰관은 감찰활동을 함에 있어서 소속공무원의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한다. 3. 감찰관은 감찰활동 전 과정에 있어 소속공무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다. 4. 감찰관은 직무와 무관한 사상·신념, 정치적 성향 등 불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 5. 감찰관은 의무위반행위의 유형과 경중에 따른 적절한 방법으로 감찰활동을 수행한다. 6. 감찰관은 객관적인 증거와 조사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7. 감찰관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엄수한다. 8. 감찰관은 선행·수범 직원을 발견하는데 적극 노력한다.
<p>감찰관의 결격사유 (제5조)</p>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찰관이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무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2. 제1호 이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아 말소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질병 등으로 감찰관으로서의 업무수행이 어려운 사람 4. 기타 감찰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p>감찰관 선발 (제6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경찰기관의 장은 감찰관 보직공모에 응모한 지원자 및 3인 이상의 동료로부터 추천 받은 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감찰관을 선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찰관 선발을 위한 적격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p>감찰관의 신분보장 (제7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경찰기관의 장은 감찰관이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밝혀졌을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승진 등 인사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2. 형사사건에 계류된 경우 3. 질병 등으로 감찰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고압·권위적인 감찰활동을 반복하여 물의를 야기한 경우 ② 경찰기관의 장은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감찰관에 대해서는 희망부서를 고려하여 전보한다.
<p>감찰관 적격심사 (제8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감찰관에 대하여 감찰관 보직 후 2년마다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인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에 준용한다.
<p>제척 (제9조)</p>	<p>감찰관은 다음 경우에 당해 감찰직무(감찰조사 및 감찰업무에 대한 지휘를 포함한다)에서 제척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감찰관 본인이 의무위반행위로 인해 감찰대상이 된 때 2. 감찰관 본인이 의무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인 때 3. 감찰관 본인이 의무위반행위로 인해 감찰대상이 된 소속공무원(이하 “조사대상자”라 한다)이나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4. 감찰관 본인이 조사대상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후견감독인인 때

<p>기피 (제10조)</p>	<p>① 조사대상자, 피해자는 다음 경우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감찰관 기피 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감찰관이 소속된 경찰기관의 감찰업무 담당 부서장(이하 “감찰부서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감찰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p> <p>1. 감찰관이 제9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p> <p>2. 감찰관이 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불공정한 조사를 할 염려가 있다고 불만한 객관적·구체적 사정이 있는 때</p> <p>② 제1항에 따른 감찰관 기피 신청을 접수받은 감찰부서장은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당 감찰관을 재지정하여야 하며,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때에는 제37조에 따른 감찰처분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기피 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의 경우 감찰부서장은 기피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p>
<p>회피 (제11조)</p>	<p>① 감찰관은 제9조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감찰직무를 회피하여야 하며, 제9조 이외의 사유로 감찰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피할 수 있다.</p> <p>② 회피하려는 감찰관은 소속 경찰기관의 감찰부서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10조제2항의 규정은 회피에 준용한다.</p>
<p>감찰활동의 관할 (제12조)</p>	<p>감찰관은 소속 경찰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다만, 상급 경찰기관의 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p>
<p>특별감찰 (제13조)</p>	<p>경찰기관의 장은 의무위반행위가 자주 발생하거나 그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기, 업무분야 및 경찰관서 등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동안 전반적인 조직관리 및 업무추진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할 수 있다.</p>
<p>교류감찰 (제14조)</p>	<p>경찰기관의 장은 상급 경찰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소속 감찰관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 다른 경찰기관 소속 직원의 복무실태, 업무추진 실태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p>
<p>감찰활동의 착수 (제15조)</p>	<p>① 감찰관은 소속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에 관한 단서(현장인지, 진정·탄원 등을 포함한다)를 수집·접수한 경우 소속 경찰기관의 감찰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감찰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감찰 대상으로서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감찰활동 착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감찰계획의 수립 (제16조)</p>	<p>① 감찰관은 제15조에 따른 감찰활동에 착수할 때에는 감찰기간과 대상, 중점감찰사항 등을 포함한 감찰계획을 소속 경찰기관의 감찰부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② 감찰관은 사전에 계획하고 보고한 범위에 한하여 감찰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감찰기간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감찰부서장이 정한다.</p> <p>④ 감찰관은 계속 감찰활동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여 소속 경찰기관의 감찰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감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자료 제출 요구 등 (제17조)</p>	<p>① 감찰관은 직무상 다음 각 호의 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요구하여야 한다.</p> <p>1. 조사를 위한 출석</p> <p>2.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진술서 제출</p> <p>3. 증거품 등 자료 제출</p> <p>4. 현지조사의 협조</p> <p>② 소속공무원은 감찰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p> <p>③ 감찰관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나 제출 받은 자료를 감찰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p>
<p>감찰관 증명서 등 제시 (제18조)</p>	<p>감찰관은 제17조에 따른 요구를 할 경우 소속 경찰기관의 장이 발행한 별지 제3호 서식의 감찰관 증명서 또는 경찰공무원을 제시하여 신분을 밝히고 감찰활동의 목적을 설명하여야 한다.</p>
<p>감찰활동 결과의 보고 및 처리 (제19조)</p>	<p>① 감찰관은 감찰활동 결과 소속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 불합리한 제도·관행, 선행·수범 직원 등을 발견한 경우 이를 소속 경찰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경찰기관의 장은 제1항의 결과에 대하여 문책 요구, 시정·개선,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감찰정보의 수집 (제20조)</p>	<p>① 감찰관은 감찰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찰정보를 매월 1건 이상 수집·제출하여야 하며, 감찰관이 아닌 소속공무원도 감찰정보를 수집한 경우에는 이를 감찰부서에 제출할 수 있다.</p> <p>1. 비위정보 : 소속공무원의 비위와 관련한 정보</p> <p>2. 제도개선자료 : 불합리한 제도·시책, 관행 등의 개선에 관한 자료</p> <p>3. 기타자료 : 관리자의 조직관리·운영 실태, 주요 치안시책 등에 대한 현장여론, 비위우려자의 복무실태 등 인사·조직 운영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p> <p>② 감찰관은 수집한 감찰정보를 별지 제4호 서식의 감찰정보보고서에 따라 작성한 후 경찰청 또는 소속 지방경찰청의 감찰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감찰정보의 처리 (제21조)</p>	<p>제20조에 따른 감찰정보를 접수한 감찰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찰정보를 구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즉시조사대상 : 신속한 진상확인 및 조사·처리가 필요한 사항 2. 감찰대상 : 사실관계 확인 또는 감찰활동 착수 등 감찰활동이 필요한 사항 3. 이첩대상 : 해당 경찰기관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보다 다른 경찰기관이나 부서 등에서 처리·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 4. 참고대상 : 감찰업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 5. 폐기대상 : 익명 제보 등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 또는 이미 제출된 정보와 동일한 정보 등 그 내용상 감찰대상으로서의 가치가 없거나 감찰업무 활용도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
<p>감찰정보심의회 (제22조)</p>	<p>① 감찰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감찰정보심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1조에 따른 감찰정보의 구분 2. 제15조에 따른 감찰활동 착수와 관련된 사항 <p>② 감찰정보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감찰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감찰부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p>
<p>평가 및 포상 (제23조)</p>	<p>① 감찰정보 실적은 개인별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 수집·처리 구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한다.</p> <p>② 개인별 감찰정보 실적은 분기별로 종합 평가하고, 평가실적이 우수한 직원에 대하여는 포상 등을 할 수 있다.</p>
<p>감찰정보시스템 (제24조)</p>	<p>경찰청 감찰담당관은 감찰정보의 수집·처리, 감찰결과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감찰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p>
<p>출석요구 (제25조)</p>	<p>① 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위해서 조사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u>조사기일 3일 전까지</u> 별지 제5호 서식의 출석요구서 또는 구두로 조사일시, 의무위반행위사실 요지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급박한 경우 또는 조사대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경우 조사일시 등을 정할 때에는 조사대상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p> <p>③ 감찰관은 의무위반행위와 관련된 내용을 조사할 때에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여 잦은 출석으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p>④ 감찰관은 조사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조사대상자의 소속 부서장에게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p>
<p>변호인의 선임 (제26조)</p>	<p>① 조사대상자는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감찰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람은 그 위임장을 미리 감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조사대상자의 진술거부권 (제27조)</p>	<p>① 조사대상자는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p> <p>② 감찰관은 조사대상자에게 제1항과 같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p>
<p>조사 참여 (제28조)</p>	<p>① 감찰관은 조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하거나 동석하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 각 목의 사람의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다른 감찰관 나. 변호인 2. 다음 각 목의 사람의 동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조사대상자의 동료공무원 나. 조사대상자의 직계친족, 배우자, 가족 등 조사대상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 <p>② 감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참여자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동석자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참여자 또는 동석자가 조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조사를 제지·중단시키는 경우 2. 참여자 또는 동석자가 조사대상자에게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거나 진술 반복을 유도하는 경우 3. 그 밖의 참여자 또는 동석자의 언동 등으로 조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p>③ 감찰관은 참여자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동석자를 퇴거하게 한 경우 그 사유를 조사대상자에게 설명하고 그 구체적 정황을 청문보고서 등 조사서류에 기재하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p>
<p>감찰조사 전 고지 (제29조)</p>	<p>① 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의무위반행위 사실의 요지를 알려야 한다.</p> <p>② 제1항의 경우 감찰관은 조사대상자에게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p>
<p>영상녹화 (제30조)</p>	<p>① 감찰관은 조사대상자가 영상녹화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p> <p>② 영상녹화의 범위 및 영상녹화사실의 고지, 영상녹화물의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범죄수사규칙」의 영상녹화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p>

<p>조사시 유의사항 (제31조)</p>	<p>① 감찰관은 조사시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실 발견에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감찰관은 조사시 조사대상자의 이익이 되는 주장 및 제출자료 등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조사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p> <p>③ 감찰관은 조사시 조사대상자의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하여 언행에 유의하여야 한다.</p> <p>④ 감찰관은 감찰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한 자 또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가명조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밀을 유지하고 그 신원을 보호하여야 한다.</p> <p>⑤ 감찰부서장은 성폭력·성희롱 피해 여성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여성 경찰공무원이 조사하도록 하여야 하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p>⑥ 감찰관은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확인하여야 하고, 필요 시 소속 경찰기관의 감찰부서장에게 보고하여 피해자 심리 전문요원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심야조사의 금지 (제32조)</p>	<p>① 감찰관은 심야(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찰관은 조사대상자 또는 그 변호인의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심야조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야조사의 사유를 조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p>
<p>휴식시간 부여 (제33조)</p>	<p>① 감찰관은 조사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사 도중에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부여하여 조사대상자가 피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감찰관은 조사대상자가 조사 도중에 휴식시간을 요청하는 때에는 조사에 소요된 시간,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휴식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p> <p>③ 감찰관은 조사 중인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거나 휴식을 취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감찰조사 후 처리 (제34조)</p>	<p>① 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소속 경찰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진술조서, 증빙자료 등과 함께 감찰 조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경우 감찰관은 조사대상자에게 감찰조사 결과 요지를 서면 또는 전화, 문자메시지(SMS) 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감찰관은 조사한 의무위반행위사건이 소속 경찰기관의 징계관할이 아닌 때에는 관할 경찰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p> <p>④ 의무위반행위사건을 이송 받은 경찰기관의 감찰부서장은 필요시 해당 사건에 대하여 추가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p>
<p>민원사건의 처리 (제35조)</p>	<p>① 감찰관은 소속공무원의 의무위반사실에 대한 민원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민원을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경찰기관의 감찰부서장에게 보고하여 그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② 민원사건을 배당받은 감찰관은 민원인, 피민원인 등 관련자에 대한 감찰조사 등을 거쳐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p> <p>③ 감찰관은 불친절 또는 경미한 복무규율위반에 관한 민원사건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정식 조사절차 또는 조정절차를 선택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민원인이 조정절차를 선택한 때에는 해당 소속공무원의 사과, 해명 등의 조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p> <p>④ 감찰관은 민원사건을 접수한 경우 접수 후 매 1개월이 경과한 때와 감찰조사를 종결하였을 때에 민원인 또는 피해자에게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진행상황에 대한 통지가 감찰조사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권리를 부당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p> <p>⑤ 제4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p>
<p>기관통보사건의 처리 (제36조)</p>	<p>① 감찰관은 다른 경찰기관 또는 검찰, 감사원 등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소속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p> <p>② 감찰관은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의결요구권자의 결재를 받아 해당 기관으로부터 수사결과의 통보를 받을 때까지 감찰조사, 징계의결요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 할 수 있다.</p>
<p>감찰처분심의회 (제37조)</p>	<p>① 감찰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찰처분심의회(이하 “처분심의회”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감찰결과 처리 및 양정과 관련한 사항 2. 감찰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와 관련한 사항 3. 감찰결과와 공개와 관련한 사항 4. 감찰관 기피 신청과 관련한 사항 <p>② 처분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감찰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감찰부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거나 학식과 경험을 고루 갖춘 해당 분야의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p>

<p>감찰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38조)</p>	<p>① 제34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조사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찰을 주관한 경찰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감찰결과 징계요구된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의견진술 등의 절차로 이의신청을 갈음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찰기관의 장은 처분심의회를 거쳐 이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찰조사 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p>
<p>감찰결과에의 공개 (제39조)</p>	<p>① 감찰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사한 비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감찰결과 요지를 공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대한 비위행위(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정보유출, 독직폭행, 음주운전 등) 2.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어 사생활 보호의 이익보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 공공의 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판단되는 사안 <p>② 감찰결과에의 공개 여부는 경찰기관의 장이 처분심의회 의견을 들어 최종 결정한다.</p> <p>③ 경찰기관의 장은 감찰결과를 공개할 경우 사건관계인의 사생활과 명예가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명, 소속 등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2. 비위혐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의 신상 및 사생활에 관한 내용 3. 사건관계인의 징계경력 또는 감찰조사경력 자료 4. 감찰사건 기록의 원본 또는 사본
<p>감찰관에 대한 징계 등(제40조)</p>	<p>① 경찰기관의 장은 감찰관이 이 규칙에 위배하여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및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담당 감찰관 교체,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한다.</p> <p>② 감찰관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의 징계양정에 정한 기준보다 가중하여 징계조치한다.</p>
<p>감찰활동 방해에 대한 징계 등(제41조)</p>	<p>경찰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거부, 현지조사 불응, 협박 등의 방법으로 감찰조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p>